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 등>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49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 등(안 제6조 제1항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민회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5.

다. 회 부 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인 등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개편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국가적으로 지원·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 라.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정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Ⅲ. 검토의견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 등(안 제6조 제1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위원장 정수 및 위원 정수 상한을 각각 3명 및 50명으로 증원하며 부위원장 1명을 상근으로 함(안 제6조 및 제7조).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제1항).
 -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제2호의2)
 -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의3)
 -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제6호의2)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u>국가인공지능위원회</u> 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u>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u>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u>국가인공지능위원회</u>)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u>국가인공지능</u>	제7조(<u>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u>) ① ----- ----- ----- ----- <u>국가인공지능전략</u>

현행	개정안
<u>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u>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후단 신설> ④ ~ ⑭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2. 인공지능등 관련 <u>정책</u>에 관한 사항 <신설>	<u>위원회</u>----- --. ② -----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 ③ ----- 제1호 또는 제4호-----.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u>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

현행	개정안
<u><신설></u> 3. ~ 6. (생략) <u><신설></u> 7. ~ 13. (생략) ②·③ (생략)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업의 부처 간 조정</u>에 관한 사항 2의3. <u>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 3. ~ 6. (현행과 같음) 6의2. <u>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u> 7.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

다. 검토사항

-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의사결정의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부위원장은 비상근임.
-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아직 시행 전 상태이나 지난 9월 8일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출범하였고 부위원장을 3명으로,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민간 출신 부위원장은 상근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 일부 구성 사항을 변경하였음.
-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혹은 차관급 공무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이 인공지능책임관이 되고 이들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함.
-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개편을 근거법률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시행일도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일

인 2026년 1월 22일로 일치시킴.

- 다만, 개정안은 인공지능책임관의 지정요건, 역할 및 업무 등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역할과 법적 지위 등을 수범자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인공지능책임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이라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 정수 및 위원 정수가 확대되었는데 정수의 적정성 여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이면서 기능이 유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 조직의 사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이 위원장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위원 정수 예시>

위원회명	법적 근거	위원장 (의장)	위원 구성 및 정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대통령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대통령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대통령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위원회’를 ‘국가AI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AI 전략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및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제1항 전단).
 -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2조의2 제1항 후단).
-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22조의2 제2항).
 -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제1호)
 -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제2호)
 -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제3호)
-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고, 정관·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안 제22조의2 제3항).
-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22조의2 제4항).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제1호)
 -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제2호)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제3호)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제4호)
 -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제5호)
 -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제6호)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제5항).
 -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제6항).
 -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제7항).
 - 인공지능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2조의2 제8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

현행	개정안
	<u>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고, 정관·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u> <u>④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u> <u>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u> <u>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이전·활용 및 사업화</u> <u>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u> <u>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u> <u>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u> <u>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u>

현행	개정안
	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⑥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현행	개정안
	<u>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⑨ <u>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⑩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u> <u>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u> <u>3.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제3항에 따른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 <u>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u> <u>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u>

현행	개정안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면서 기업, 대학 등은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은 아직 상용화나 사업화가 되기 전이라 자체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의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¹⁾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규 세부사업으로 AGI 준비 프로젝트에 200억 원을 편성하여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같은 인공지능 정책지원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출연이나 보조를 받지만 대부분의 일반 민간 연구소는 과제를 통해 지원을 받을 뿐 연구소 설립·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 개정안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인공지능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출연·보조 등 지원, 보조금·기부금 내지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 인력 파견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정비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인공지능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 경비까지 출연·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등 민간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주체에게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구체적인 설립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고려되는 요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법률에 따른 규정만으로는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연구소의 범위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간 연구소 운영비 지원의 실익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소의 설립허가 기준, 연구소장의 권한, 직원의 파견 등과

같은 내용은 통상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사항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별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정도의 입법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적 측면과 기본법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30